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7. 14.  
도시건설위원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7월 3일 유남열 의원의 13인 발의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7월 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유남열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의 개정('96.12.27)으로 제18조에 시가지 개발계획으로 시행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을 인근 토지와 건물 높이 제한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누락된 내용을 개정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영등포구건축조례제18조 각호중에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을 신설하여 인 근 토지와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형평성 유지.

## 3.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전문위원 : 유 재 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18조(통과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의거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한 이미 개발된 구역내에 건축하는 건물의 높이를 인근 토지와 건물의 높이 제한에서 완화하여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18조 1-6호까지는 맞는 조례이나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이 누락 되어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어 제출된 것이며, 제출된 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음.

## 4. 審 査 結 果 : 원 안 의 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130
번 호	

제출년월일 : '97. 7. 3.  
제 출 자 : 유남열의원의13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의 개정('96.12.27)으로 제18조에 시가지 개발계획으로 시행 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을 인근 토지 높이와 건물 높이 제한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누락된 내용을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영등포구건축조례제18조 각호중에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을 신설하여 인근 토지와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따로붙임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호 시가지 재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 (안)
제18조 (생략)	제18조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3. (현행과 같음)
4. 도심재개발 구역	4.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